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75

발의연월일: 2020. 9. 11.

발 의 자: 김주영·신정훈·이용빈

문진석 · 양기대 · 최종윤

이장섭 · 유영찬 · 김정호

강훈식 · 송영길 · 이용우

이병훈 · 박홍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시정명령·벌칙 등을 두고 있는데, 현행법상 벌칙으로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경우에는 별다른 벌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사후벌칙 제도보다는 사전에 시정명령에 대한 벌칙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급성을 요하는 물가안정 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이 발생하던 당 시, 매점매석에 대한 사후 처벌보다도 재빨리 정상적인 공급을 유도하 거나 국가가 해당 물품을 몰수하여 공급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물품을 압수토록 함으로써시급한 물가안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시급한 상황에서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도모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9조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점매석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1.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한 이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 2.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한 이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시정 또는 중지명령만으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 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점매석 물품의 몰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점매석 물품을 몰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벌칙) (생 략)	제26조(벌칙)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9조에 따라 매점매석 행
	위에 대한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점매석 물품을 몰
	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
	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한 이후
	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
	수 이상으로 위반행위가 반복
	되는 경우
	2.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한 이후
	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
	<u>하는 경우</u>
	3. 시정 또는 중지명령만으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
	해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